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112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찬

담당변호사 박서이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7.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24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917,9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9. 5. 12. 선고 98가단6031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주식회사 E, B 등 7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2219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9.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 B, F, G는 연대하여 575,333,525원 및 그 중 562,291,528원에 대하여 1996. 10. 1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E, B, F, G, H, I은 연대하여 157,372,601원 및 그 중 156,842,465원에 대하여 1996. 10. 1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다. 피고 주식회사 E, B, F, G는 연대하여 29,373,686원 및 그 중 29,181,085원에 대하여 1996. 9. 5.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라. (1) 피고 주식회사 E, B, F, G는 연대하여 15,252,4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1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2) 피고 주식회사 J은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항 기재 금원 중

1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31.부터 1999. 2. 14.까지는 연 6%, 1999.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7. 10. 23. B과 사이에 23,700,000원을 이율은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위 대여금 23,700,000원을 2017.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며(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2417호).

라. 피고는 2017. 11.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타채726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B이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으로부터 받게 될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1018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2189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26. ‘B은 원고에게 827,311,795원과 그중 29,181,085원에 대하여는 1996. 9. 5.부터, 711,227,340원에 대하여는 1996. 10. 16.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1) 이 담긴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1. 12. 확정되었다.

사. 한편, B이 2022. 8.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중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23,917,9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3.경 B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게 될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소외 회사를 상대로 추심을 시도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에 앞선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B의 급여를 추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회신을 받은 2018. 4.경 무렵에는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2. 7.경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사해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참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8. 4. 3. B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게 될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8. 4. 5. 소외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에 앞선 이 사건 전부명령이 존재하므로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2018. 4. 무렵 소외 회사에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B의 급여를 독점적으로 추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채권원인서류, 금전거래내역 등)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 인정될 따름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는 1999. 5. 12. 선고된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5.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최소한 1999. 5. 12.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2017. 10. 23.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원인이 된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앞선 2002년경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사해행위는 B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계약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은 1999. 5. 12. 선고된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구상금 채권은 피고가 자신의 대여금 채권 발생 시점이라 주장하는 2002년보다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나) B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렇다 할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직후 내려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47억여 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무자력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무자력 상태였던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내려진 이 사건 확정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이 내려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사건의 판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이전인 2011. 3. 23. 열린 이 법원 2011카명9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명시 선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B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B에게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2004. 1. 30.인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채무액이 같으므로, B이 중간에 위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B이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시점인 2017. 10. 23.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B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17. 10. 30.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B의 급여채권 중 23,917,98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 23,917,98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소외 회사에 위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필

별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사이 2017. 10. 23.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241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터 잡아 강제집행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채726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B이 2022. 9.부터 퇴직 시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게 될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퇴직금의 경우 2017. 10. 1.부터 퇴직 시까지 적립된 금액) 등에 관하여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적립되게 될 전부금 채권 전액. 끝.

1) B와 무관한 부분은 생략한다.